

지방의원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박중화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395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박중화, 강석주, 곽향기,
김영철, 김재진, 박 석,
소영철, 유만희, 윤기섭,
이상욱, 이상훈, 이숙자,
이종태, 이종환, 임규호,
최민규, 최유희, 홍국표,
황철규 의원(19명)

1. 주문

-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방의회가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원이 의회 내 발언한 내용에 대한 면책 특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 의함.

2. 제안이유

- 현재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헌법(제45조)에서 「국회에 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에게 국회에서 발언의 자유를 최대한 보 장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에 아무런 명문규 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발언에 면책특권을 국회의원과 동일하 게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지방의원은 발언에 대해 민사·형사상 책임을 별도로 질 수 있는 등 제약을 가져옴으로써 큰 틀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으며, 주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의원이 다양한 사회적, 지역적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의정활동이 위축됨과 동시에 의회 본래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 기능이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의정활동에 있어서 발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지방의원에게도 면책특권 부여를 통해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정치적·사회적 논쟁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의사전달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의사결정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원에게도 의회 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면책특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행정안전부)에 요청할 것을 건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의원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방의회가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이 의회 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헌법(제45조)에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에게 국회에서 발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에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발언에 면책특권을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원은 발언에 대해 민사·형사상 책임을 별도로 질 수 있는 등 제약을 가져옴으로써 큰 틀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으며, 주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의원이 다양한 사회적, 지역적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의정활동이 위축됨과 동시에 의회 본래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 기능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의정활동에 있어서 발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원에게도 면책특권 부여를 통해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정치적·사회적 논쟁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의사전달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의사결정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원에게도 의회 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면책특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행정안전부)에 요청할 것을 건의합니다.

2025.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